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 4.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9년 4월 9일
- 다. 상정일자 : 제1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9. 4. 10)
 제14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9. 4. 13)
 제14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09. 4. 14)
 제14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9. 4. 15)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

나. 제출내역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의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302,237,707	294,938,314	7,299,393	2.47
일 반 회 계	275,231,715	267,932,322	7,299,393	2.72
특 별 회 계	27,005,992	27,005,992	0	0
의료보호기금	385,469	385,469	0	0
주 차 장	21,153,762	21,153,762	0	0
기반시설부담금	1,540,000	1,540,000	0	0
마포농수산물시장	3,926,761	3,926,761	0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 승 관)

1) 예산규모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72억 4,254만 4천원이 포함된 2,949억 3,831만 4천원 대비 약 2.47%에 해당하는 72억 9,939만 3천원이 증가한 3,022억 3,770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2% 증가한 2,752억 3,171만 5천원,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음.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9,939만 3천원이 증가(2.72%)
-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75,231,715	267,932,322	7,299,393	2.72
지 방 세	70,135,847	70,135,847	0	0
세 외 수 입	62,038,703	55,640,821	6,397,882	11.50
지방교부세	1,000,000	1,000,000	0	0
조정교부금 등	80,786,075	80,786,075	0	0
보 조 금	61,271,090	60,369,579	901,511	1.49

- 주요 증액 사유는
 -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해도에 지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63억 9,788만 2천원과 국·시비보조금 9억 151만 1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72억 9,939만 3천원이 되겠으나, 일반회계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청사시설 보완 포괄공사비 등 31건 11억 5,359만 9천원이 세출예산에서 감액 편성되어, 본 추경예산안의 실제 가용재원은 84억 5,299만 2천원이 되겠으며,
- 2008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4,585만 2천원으로 추정되나 2009회계연도 본예산에 27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63억 9,7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추경예산 재원은 약 242억 1,297만원이 되겠음.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52억 3,17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72%에 해당하는 72억 9,939만 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편성된 경비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 인건비는 759억 3,17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80%에 해당하는 13억 4,129만 2천원이 증가 하였는바, 이는 세계적인 불황에 대처하고 경제활성화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물건비는 306억 3,0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0.09%에 해당하는 2,635만 6천원이 감소
 - 경상이전은 1,201억 5,4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5%에 해당하는 18억 2,304만 6천원 증가
 - 자본지출은 425억 1,1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8.03%에 해당하는 31억 6,141만 1천원 증가
 - 내부거래는 22억 5,09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79.94%에 해당하는 10억원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5,179만 7천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음
- 조직별로 분류해 보면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275,231,715	267,932,322	7,299,393	2.72
의회사무국	2,990,152	2,990,152	0	0
감사담당관	193,607	175,395	18,212	10.38
행정관리국	100,728,275	101,331,781	△603,506	△0.60
기획재정국	10,657,875	9,657,875	1,000,000	10.35
주민생활국	122,378,534	117,886,211	4,492,323	3.81
도시관리국	12,660,136	12,739,045	△78,909	△0.62
건설교통국	19,240,976	16,826,791	2,414,185	14.35
보 건 소	6,382,160	6,325,072	57,088	0.90

3) 검토의견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으로 구 예산의 건전 운영을 위해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운영경비 등은 편성을 하지 않는 등 구민복리와 직결되는 부분과 기간시설의 보수 및 확충사업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는 판단되나,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이후 신규 투자수요의 발생,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고려하는 한편,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신규사업과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기존 사업의 축소 필요성 여부, 효과와 효율에 근거한 기존사업의 지속여부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적시성,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 자치행정과의 마포경찰서 112신고센터 통신장비등 구매 지원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순수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경찰사무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국가사무라 하여도 그 사무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국가와 협의하여 그 권한 내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관련 경찰사무와 주민의 복리증진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교육지원과의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제도상 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이원화되어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 부문으로의 과다한 재정지출로 인해 일반재정 운용
 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기해야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구청장이 보
 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
 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추경예산안에서도 증액하여 지원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
 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
 고 있는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
 서 지역사회개발 및 중 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
 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바,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요구한 마포구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예산 내역 중 법
 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미약한 사업은 없는지 여부 및 행정조직, 기구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지원경비를 요구한 사업은 없는지와 불요
 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검토보고서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